

영주(거주)귀화자 맞춤형 통합시민교육 실시 알림

'22. 7월부터 거주(F-2)·영주(F-5) 자격자(신청자 포함), 국적취득 예정자·귀화신청자 및 이공계 연구원·유학생을 대상으로 영주·귀화자의 권리와 의무, 법질서 교육 등 통합시민교육을 실시합니다.

□ 교육과정 및 이수대상

연번	교육과정명	이수대상	교육내용
1	준법시민교육	경미한 법 위반자 등 해당자 (거주 및 영주 신청자 등)	(3시간 과정) 영주귀화자의 권리의무, 법질서 교육 등
2	국적취득예정자 시민교육	국적증서수여식 참여자	국적취득 후 해야할 일, 국민의 권리와 의무, 일상생활에 필요한 국내법 교육 등
3	귀화면접대비 시민교육	귀화신청자	(3시간 과정) 영주귀화자의 권리의무, 귀화면접대비
4	(찾아가는) 우수인재 시민교육	이공계 연구원·유학생	영주귀화 취득 절차, 외국인 대상 서비스 정보 제공, 법질서 교육 등
5	일반영주귀화자 지역특화시민교육*	일반영주귀화자	(3시간 과정) 영주귀화자의 권리의무, 지역정보 등

* 일반영주·귀화자 대상 지역특화시민교육은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시범실시 후 '23년 정식운영 예정

□ 교육 장소 및 신청방법 ※ 체류지 관할 출입국·외국인관서로 신청

- (장소) 지방 출입국·외국인청(사무소), 대학교,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
- (신청방법) 교육신청서 직접 제출 또는 출입국·외국인관서별 이민통합지원 센터 이메일 신청 (국적취득예정자 시민교육은 별도 신청 불요)

※ 교육일정, 교육신청서 서식 및 체류지 관할 이민통합지원센터 주소(연락처,이메일)는 사회통합정보망 (www.socinet.go.kr), 하이코리아(www.hikorea.go.kr)에서 확인 가능

□ 기타 문의사항

- 자세한 문의사항은 ☎1345(국번없이) 또는 체류지 관할 출입국·외국인 관서별 이민통합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